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인체적용제품의 통합위해성평가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증원하고, 해양수산부와 협업으로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안전관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2025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의약품안전국의 1개 정책관 등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농촌진흥청 소속 1명(6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으로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23명 중 13명(연구관 5명, 연구사 8명)은 감축하며, 10명(4급 1명, 연구관 3명, 연구사 6명)은 2023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의약외품 분야 연구개발 업무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29289호, 2023. 1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7급 1명)을 행정·기술직군 정원 1명(7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2. 00. ~ 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 ②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3월 31일까지 별표 10에 따른 한시정원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두며, 별표 10의 정원 1명(보건연구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별표 3 중 총계 “643”을 “644”로 하고, 일반직 계 “642”를 “643”으로 하며, 약무주사·의료기술주사·전산주사·보건연구사 또는 공업연구사 16 다음에 “행정주사·농업주사 또는 농업연구사 1”를 신설하고, 행정주사보·식품위생주사보·약무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전산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수의주사보 “121”을 “122”로 하며, 사무운영주사보 “2”를 “1”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658”을 “659”로 하고, 일반직 계 “657”을 “658”로 하며, 약무주사·의료기술주사·전산주사·보건연구사 또는 공업연구사 1

6 다음에 “행정주사·농업주사 또는 농업연구사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보·식품위생주사보·약무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전산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수의주사보 “121”을 “122”로 하며, 사무운영주사보 “2”를 “1”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434”를 “435”로 하고, 일반직 계 “434”를 “435”로 하며,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112”를 “113”으로 한다.

별표 9제1호1)를 삭제한다.

별표 9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9의2]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33조의2제2항 관련)

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

총계	10
일반직 계	10
기술서기관 ·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1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3
보건연구사 또는 공업연구사	6

[별표 10]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34조 관련)

1. 제34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4월 30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또는 식품위생사무관	1

2. 제34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3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보건연구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한시정원) ① (생 략)	제34조(한시정원) ① (현행과 같 음)
② <u>잔류농약 모니터링 및 농약 등록기준 설정 등의 업무를 추 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 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 조제1항에 따라 2023년 4월 30 일까지 별표 10에 따른 한시정 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며, 별표 10의 정원 1명(행정주사· 농업주사 또는 농업연구사 1명) 은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u>	② <u>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안전 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 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3월 31일까지 별표 10에 따른 한시정원을 식품의약품안 전평가원에 두며, 별표 10의 정 원 1명(보건연구관 또는 해양수 산연구관 1명)은 해양수산부 소 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u>
③ <u>의약외품 분야 연구개발 사 업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 년 2월 28일까지 별표 10에 따 른 한시정원을 식품의약품안전 평가원에 둔다.</u>	<삭 제>

신 · 구 정원 대비 표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u>643</u>		<u>644</u>	+1
	.		.		.	
	.		.		.	
일반직 계			<u>642</u>		<u>643</u>	+1
	.		.		.	
	.		.		.	
<u>행정주사 · 농업주사 또는</u> <u>농업연구사</u>			<u><신 설></u>		<u>1</u>	+1
행정주사보 · 식품위생주사보 · 약무주사보 · 의료기술주사보 · 전산주사보 · 공업주사보 또는 수의주사보			<u>121</u>		<u>122</u>	+1
	.		.		.	
	.		.		.	
사무운영주사보			<u>2</u>		<u>1</u>	-1
	.		.		.	
	.		.		.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의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658	659	+1
일반직 계	657	658	+1
행정주사 · 농업주사 또는 농업연구사	<신 설>	1	+1
행정주사보 · 식품위생주사보 · 약무주사보 · 의료기술주사보 · 전산주사보 · 공업주사보 또는 수의주사보	121	122	+1
사무운영주사보	2	1	-1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434</u>	• <u>435</u>	+1
일반직 계	<u>434</u>	<u>435</u>	+1
•	•	•	
•	•	•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u>112</u>	<u>113</u>	+1
•	•	•	
•	•	•	